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1
----------	------

제출연월일 : 2025. 5.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청년의 나이를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하고,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나이를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화폐” 용어 정비(안 제2조제3호)
- 다. 저소득청년 또는 재난발생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 기존 분기별 25만원 지급에서 일시금 100만원 지급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려 함(2001년생부터 적용)
- 라.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비(안 제4조제1호, 제4조제2호, 제6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5. 4. 1. ~ 2025. 4. 21.(20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청년”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경기도내”를 “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을 “이상 도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분기마다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부양의무자,”를 “부양의무자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청년일자리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팀장 직위 · 성명	청년지원팀장 김효진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신해인 (031-5182-123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청년</u>”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p> <p>2. (생 략)</p> <p>3. “<u>지역화폐</u>”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하남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u>발행자 등</u>”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p> <p>4. “<u>저소득 청년</u>”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p>	<p>제2조(정의) ----- -----.</p> <p>1. “<u>청년</u>”이란 「하남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화폐</u>”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타조례 제정, 2023.11.23.>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익일에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

제4조(지급대상) -----

1. 도에 -----

2. -----

--- 이상 도에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 지역화폐 -----
-----.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삭 제>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

-----.

----- 부양의무자 또는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비용 미발생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급액은 변동이 없으며, 기존 사업의 지급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이므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문화국 청년일자리과장(김진국)

관계법령 발췌서

1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8호, 2023. 5. 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4.13.>

2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9. 3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59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1. “하남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하남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4. 9. 30.>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5. 3. 12.] [경기도조례 제8392호, 2025. 3. 12., 일부개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5.3.12.>
-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3.12.]
- ③ 삭제<2025.3.12.>

관련 공문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2025.2.20.)

나.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1528(2025.2.20.) 호

다. 경기도 소통협치관-3204(2025.2.21.) 호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5.2.20.)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시·군에서도 금번 道 조례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시·군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시어 조례개정 사항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경 기 도



수신자 수원시장(청년청소년과장), 용인시장(청년담당관), 화성시장(청년청소년정책과장), 부천시청(청년청소년과), 남양주시청(청년정책과장), 안산시청(청년정책관), 평택시장(청년정책과장), 안양시장(청년정책관), 시흥시평생교육원장(청년청소년과장), 파주시청(청년청소년과장), 김포시장(일자리정책과장), 의정부시장(청년정책과장), 광주시장(지역경제과장), 하남시장(청년일자리과장), 광명시장(사회적경제과장), 군포시장(아동청소년과장), 양주시청(아동청소년과장), 오산시청(지역경제과장), 이천시청(청년아동과장), 안성시장(사회복지과장), 구리시장(일자리경제과장), 의왕시장(기업일자리과장), 포천시청(일자리경제과장), 양평군수(가족복지과장), 여주시청(복지행정과장), 동두천시청(복지정책과장), 과천시청(복지정책과장), 가평군수(일자리정책과), 연천군수(복지정책과), 고양시장(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김동그라미 청년정책팀장 정용수 청년기획과장 진급 2025. 2. 21. 이인용

협조자

시행 청년기획과-2074 (2025. 2. 21.) 접수 청년일자리과-2596 (2025. 2. 21.)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2층 평생교육과 / <https://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3439 팩스번호 031-8008-3969 / kdgrmf@gg.go.kr / 비공개

문서 한 장을 인쇄할 때 이산화탄소 5g이 발생됩니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청년</u>”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4. “<u>저소득 청년</u>”이란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p> <p>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u>분기별로 지역화폐</u>로 지급한다.</p> <p>② <u>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u></p>	<p>제2조(정의) ----- -----.</p> <p>1. “<u>청년</u>”이란 「<u>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u>」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 -----<u>지역화폐</u> -----.</p> <p>② <u>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u></p>

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